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의 효과적 방지 및 조사에 관한 원칙<sup>1)</sup>**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9/65(1989.05.24.)의 권고에 따름<sup>2)</sup>**

**예방**

1. 정부는 법으로써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을 금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처형이 각 국의 형법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고 그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써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쟁이나 전쟁 위협, 내정불안정이나 기타 공중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처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처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행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에는, 단지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국내 무장갈등, 공무원 및 공적 능력을 가진 자 혹은 그런 자의 사주, 동의나 묵인 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한 과도하거나 불법적 무력사용, 유치 중 사망하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 금지는 정부 당국이 발부하는 명령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2.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정부는 체포, 구속, 구금, 유치 및 감금(징역)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과 법에 의하여 무력을 사용토록 허가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지휘계통을 포함한 엄격한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상급자 혹은 공권력이 그런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을 타인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허가하거나 조장하는 명령을 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 모든 이는 그러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법집행공무원 훈련은 위 사항을 강조하여야한다.
4. 사법 및 기타 수단을 통한 효과적 보호는 살해위험을 받는 자를 포함해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의 위기에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느 누구도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실질적 사유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거나 인도되어서는 아니된다.
6. 정부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유치장소에서 억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유치 및 행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송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그의 친인척이나 변호사 혹은 신뢰관계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의료인력 혹은 이에 준하는 독립적 기관 등 자격을 갖춘 감사관이 유치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직권으로 불시(미통지)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를 행사할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보장과 함께 부여받아야 한다. 감사관은 유치장소 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기록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1) [역자주] 국가인권위원회의 선행번역에서는 “초법적, 자의적, 약식처형의 효율적 방지와 수사에 관한 원칙”이라 함(조시현. (2007). “[발제문1]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몇 가지 쟁점”.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발제문1-27.).

2) 결의안 1989/65, 단락1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의 효과적 방지 및 조사에 관한 원칙”을 각 정부가 그들의 국가법률 및 관행의 틀 안에서 참작하고 존중할 것을 권고하였다.

8. 정부는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적 중재, 정부간 혹은 사법 기구에 진정할 개선된 접근권, 공적 공개적 비난 등의 조치를 통해 모든 노력을 들여야 한다. 정부간 체제는 그러한 처형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고 그런 관행에 대항하는 효과적 행동을 취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이 발생한다고 합당하게 의심되는 국가를 포함하여, 정부는 이런 주제에 대한 국제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

9.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이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즉각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친인척 혹은 다른 신뢰할 만한 보고가 위상항하의 비자연적 죽음에 대하여 진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부는 조(수)사관 및 이런 조사(취조)를 진행할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수)사의 목적은 사망의 원인과 방식 및 시각, 책임자 그리고 사망을 야기한 양식이나 관행을 밝히는 데 있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부검, 모든 물적 및 서류 증거 그리고 참고인(목격자) 진술의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한다. 이런 조(수)사는 자연사와 사고사, 자살 및 타살을 구분하여야 한다.
10. 조(수)사 당국은 이런 조사(취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조(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자들은 효과적 조(수)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예산 및 기술적 자원을 그들의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처형에 연루되었다고 제기되는 공무원들에게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 이는 어떠한 참고인(목격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참고인(목격자) 및 그런 처형에 연루되었다고 제기되는 공무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11.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혹은 악습(abuse)의 명확한 양식에 따라서 기존의 조(수)사 절차가 전문성 혹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그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독립적 조(수)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한 조(수)사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으로서의 공정성, 역량, 독립성을 인정받아 선출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은 조사(취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관, 기구 혹은 사람으로부터든지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런 위원회는 이런 조사(취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런 조사(취조)를 이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 사망자의 시신은, 가능하면, 법의학의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적절한 부검이 진해되기 전까지는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부검을 진행하는 자는 조(수)사 자료 전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사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약 시신이 매장되었고 나중에 조(수)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부검을 위해 시신을 지체없이 그리고 충분히 발굴해야 한다. 만약 유골이

발견되었다면 유골을 조심히 발굴하고 체계적 인류학기법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

13. 사망자의 시신은 부검을 진행하는 자들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동안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부검은 최소한 사망자의 신상과 사망의 원인 및 방식을 확립하는 것을 시도하여야 한다. 사망 시간과 장소 또한 가능한 범위까지 밝혀져야 한다. 사망자의 자세한 색채사진도 기록과 조(수)사 결과물을 지지하기 위해 검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안보고서는 사망자에게 있는 어떠한 혹은 모든 부상을, 고문의 어떠한 증거든지 포함하여 기술해야만 한다.
14.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검을 진행하는 자는 연루되었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 혹은 기관으로부터든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한다.
15. 진정한, 참고인(목격자), 조(수)사를 진행하는 자, 그들의 가족은 폭력, 폭력의 위협 혹은 어떠한 종류의 위협으로부터든지 보호받아야 한다.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참고인(목격자), 조(수)사를 진행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조(수) 진행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통제권을 가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해임되어야 한다.
16. 사망자의 가족 및 그들의 법률대리인은 주(수)사에 연관된 모든 정보를 비롯하여 어떤 공청회/공판이든지 접근권을 갖고 통지받아야 하며 다른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망자의 가족은 의료 혹은 다른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검안에 출석할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망자의 신상이 밝혀진 때에는 사망통지가 송달(post)되어야 하며 그 가족과 친인척이 즉시 이를 통지받아야 한다. 사망자의 시신은 조(수)사 완료시점에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17. 그런 조(수)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시간 기한 내에 서면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보고서는 즉시 공개되어야 하고, 조사(취조) 범위, 절차 및 증거를 평가하는 데 쓰인 방법 그리고 그 결과와 적용가능한 법률에 바탕을 둔 결론과 권고를 다뤄야 한다. 이런 보고서는 또한 발생했다고 밝혀진 구체적 사건과 그런 결과가 근거한 증거를 세밀히 기술하고 자신들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진술한 참고인(목격자)의 성명을 기술해야 한다. 정부는 합당한 시간 내에 조(수)사 보고서에 답변하거나 이에 대한 응답을 위해 취할 조치를 표시해야 한다.

### 소송 절차

18. 정부는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어떤 영토에서 내에서든지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에 참여했다고 조(수)사로 확인된 사람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 자들을 정의의 심판에 회부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희망하는 국가에 해당 인물들을 인도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가

했 혹은 피해자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국적이 무엇이든, 어디서 범죄가 저질러졌든지에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9. 위 제3원칙을 침해하지 않게 상급자나 공권력으로부터의 명령이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상급자, 관료/경찰/장교(officer) 혹은 공무원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공직자가 범한 행동에 대하여, 만약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합당한 기회가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 포위 혹은 공중비상사태라도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에 연루되었다고 제기되는 누구에게도 형사기소에 대한 포괄적 면책권이 인정될 수 없다.
20.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 피해자의 가족 및 피부양자는 공평하고 적합한 보상을 합당한 시간 내에 받을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